

# 꼭! 알아 두어야 할 중소기업 지원제도

중소기업이 알아야 할 중요 지원제도를 매월 게제하여 경영 지원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활용바랍니다.



## ■ 정책자금 지원

### ● 개발기술사업화자금

중소기업이 개발하거나 이전받은 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생산설비, 시험검사 장비 도입 및 사업화를 위한 원부자재 구입비용, 시장개척비용 등을 지원합니다.

**융자규모 : 2,580억원**

※ '10년 지원현황 : 신청기업 994개사 중 659개사 선정지원, 업체당 평균 2.4억원

### 지원대상

### ● 전략산업을 영위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 아래의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자체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InnoBiz기업

※ 전략산업 : 녹색·신성장동력산업, 뿌리산업, 부품·소재산업, 지역전략·연고산업, 지식서비스산업, 문화콘텐츠산업, 바이오산업, 융복합산업 및 프랜차이즈산업

- 중소기업청 등 정부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(완료)한 기술
- 특히 또는 실용신안 등록 기술
-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(신기술(NET), 전략신기술, 보건신기술(HT) 등)
- 국내외의 대학, 연구기관, 기업,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
- 「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」상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 인증을 받은 기술
- 기업부설연구소(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)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

### 융자범위

- 시설자금 :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생산설비,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
- 운전자금 :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, 시장 개척 비용 등

### 융자조건

- 대출금리 : 공자기금 대출금이례서 0.6%p 차감(기준금리)
- 대출기간 : 시설은 3년 거치 5년 상환, 운전은 2년 거치 3년 상환
- 대출한도 : 기업당 연간 20억원(운전자금은 5억원)

### 융자방식

-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를 통한 대리대출(업체가 선택)

## ■ 기술개발 지원

-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

미래 성장 유망 분야에 대한 중소기업의 사업화 기술개발을 지원하여, 고부가 가치 제품화에 따른 시장개척 및 혁신형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합니다.

**지원규모 : 2,091억원(신규과제 1,071억원, 계속과제 1,020억원)**

※ '10년 지원현황 : 신청기업 4,424개사 중 신규 1,036개사, 계속 360개사(과제당 1.9억원)

### 지원대상

-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원칙으로 하되,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

※ 제외업종 : 숙박 및 음식점업, 부동산업 및 임대업, 오락업 및 문화업, 공공·수리 및 기타 서비스업

### 지원내용

구분	내용
글로벌 강소기업 육성과제 (100억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정부출연금(총사업비의 60% 이내), 개발기간 2년 이내, 최대 8억원까지 지원</li> <li>수출경쟁력을 지닌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성장유망품목 기술개발과제 지원(자유응모)</li> </ul>
투자연계과제 (120억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정부출연금(총사업비의 60% 이내), 개발기간 2년 이내, 최대 8억원까지 지원</li> <li>수입대체 및 수출유망 전략품목을 발굴하여 '민간 투자연계 방식'을 통해 지원(지정공모)</li> </ul>
미래선도과제 (851억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정부출연금(총사업비의 75% 이내), 개발기간 2년 이내, 최대 5억까지 지원</li> <li>저탄소 녹색성장, 침단융합 등 핵심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중소기업형 유망기술을 '지정공모 방식'으로 지원</li> </ul>

#### ▣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

- 수출경쟁력 우수업체 지원을 위한 전용 R&D과제 신설(→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과제)
  - '11년도부터 지정공모과제 중심의 전략분야 R&D지원으로 특화
- ※ 기존 '창업실용과제'를 별도 사업으로 분리 →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('11년 신규, 950억원)

### 신청·접수·온라인(인터넷)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

※ 사업계획서 신청 : <http://www.smtech.go.kr> → 회원가입 → 로그인 → 과제관리 → 과제 신청 → 지원사업 선택 후,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(구비서류) 등록

### 문의처

-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: 042-481-4446, 4451
-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: 042-715-2320~7 / 2329-2333
- 전용정보사이트 : [www.smtech.go.kr](http://www.smtech.go.kr)(기술개발 종합과제관리시스템)
- 전화상담은 1661-1357(R&D 고객센터), 비즈인포([www.bizinfo.go.kr](http://www.bizinfo.go.kr))

## ■ 인력지원

### ● 인력채용 패키지 사업

중소기업의 인력수요에 맞추어 집합교육과 현장연수를 통해 양성한 인력을 중소기업이 채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
**지원규모 : 미취업자 3,000명(전체 예산 30.3억원)**

※ 2010년 지원현황 : 미취업자 3,000명 지원

### 지원대상

-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단체 등이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채용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선발한 미취업자  
※ 단, 중소기업청장이 인력난 및 실업 문제 완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지원가능

### ※ 지원이 안되는 인력

- 실업급여 수급자(단, 실업급여 또는 수당포기시 참여 가능)
- 기업에 근무하거나 채용이 확정 상태인자(정규직, 임시직, 아르바이트 등 고용형태는 불문)
-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중 현장실습에 참가중인 자
- 재학생, 휴학생 및 졸업예정자(단, 방송통신대학, 야간대학, 사이버대학은 제외)
- 중소기업 인력채용패키지사업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자(단, 사업참여후 6개월 이상 미취업 상태인자로서 취업의지가 명확한 경우에는 수당없이 재참여 가능)

### 지원내용

- 집합교육수당(2~3개월) : 1인당 월 11만6천원(노동부 지급)
- 기업현장연수수당(1~3개월) : 1인당 월 70만원(중기청 지급)

### ▣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

- 집합교육이 노동부 내일배움카드제(계좌제)로 통합되어 수강자 본인이 인력채용패키지 사업공고시 대상으로 하는 과정을 선택하여 계좌재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
- 중소기업청 인력채용패키지 과정은 수강생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나 일부과정은 수강생 부담금이 발생
  - 계좌제 하에서의 본인부담금 40~80만원

**신청·접수 :** 인력채용패키지 홈페이지([job.kbiz.or.kr](http://job.kbiz.or.kr))에 접속하여  
교육과정 검색후 해당과정의 모집기간 중 온라인 신청 또는 보조사업자  
(교육기간)에게 선정

※ 보조사업자 :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업종별 협동조합, 사업자단체와 중소기업 지원기관으로 연수생 선발 및 교육, 현장연수, 채용연계·알선 등 업무 수행

### 문의처

- 중소기업청 인력지원과 : 042-481-3979
- 중소기업중앙회 산업인력팀 : 02-2124-3380~3385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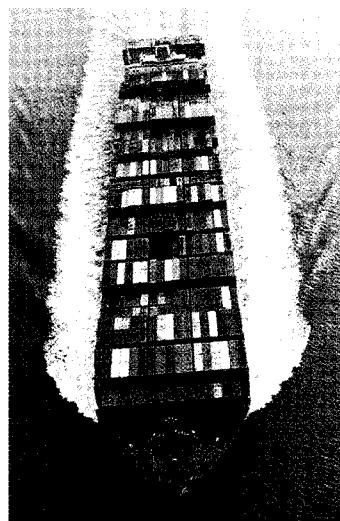
### ■ 판로지원

#### ● 직접생산 확인제도

중소기업이 직접생산 확인을 받으면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및 1,000만원 이상의 소액 수의계약 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.

### 지원규모

- 직접생산 확인(건) : ('09) 20,336, ('10) 21,012



## 제도활용

-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을 구매하는 계약
- 1,000만원 이상, 5,000만원 이하의 소액 수의계약 및 1,000만원 이상의 특정 단체 등과의 수의계약

### ※ 수의계약 대상자

- 특정단지·특별지원지역 입주공장, 국가유공자 복지공장, 특별법인, 사회복지사업법인, 국가유공자 상이단체, 장애인 복지시설·단체 등에 한정

## 제도내용

- 지정된 품목에 한하여 직접생산 확인제도 이용가능
- 품목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품목과 동일하며 공공구매종합정보망 하단에 상시 공고

**신청·접수 : 공공구매종합정보망([www.smpp.go.kr](http://www.smpp.go.kr))을 통한  
온라인 신청(수시)**

※ 주요 확인 내용 : 생산공장·시설·인력·공정 등

## 문의처

-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: 042-481-4475
- 중소기업중앙회 공공구매팀 : 02-2124-3120~5
- 전용정보사이트 : [www.smpp.go.kr](http://www.smpp.go.kr)

